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1728호

시행일자 2021. 12. 27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 과  
개원의협의회회장

참 조

제 목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(제2021-321호)  
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21호(2021. 12. 24.)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 
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 
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 
고시 제2021-299호, 2021.1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 
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  
랍니다.

- 다 음 -

주요개정사항

-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, 비급여 품목, 행위료 포함 품목, 100분의 100미만  
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,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, 일부 품목 삭제, 일부 품목 제  
조사 등 변경
-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, 비급여 품목 신설

시행일 :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. 단, 별지7의 개정 규정은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 
각각 시행

붙임 :

1. 고시 개정안 1부.
2. 변경대비표 1부.
3. 별지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